

'23년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자 포상계획안

1. 포상 개요

- (목 적)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 등의 상생협력에 기여하고,
 - 자발적 상생노력을 유인하여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격려
- (표 창 명)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 (규 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총 3점('23년 신규)
- (대 상)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우수 이행기업(기관) 및 업무 담당자
- (부 문) 상생협력 우수 기관 및 제도이행 우수 유공자로 구분

구분	추천 대상	'23년 계획	비고
상생협력 우수 기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년도부터 표창추천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한 대기업 ◆ 내부 관리기준 정비, 예방 점검 등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준수를 위해 노력한 기관 	3점	
제도이행 우수유공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 (선정절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2. 기관표창 포상 추천 접수 및 추천기준

◆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의 경우, 행정자치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기관 표창의 경우 기관별 정해진 포상기준*을 따름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훈령 제77호) 및 장관 표창 업무안내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기간) '23. 7. 14.(금) ~ 8. 14.(월)
- (신청방법) 전자우편(bms@win-win.or.kr)으로 신청
 - * 제출서류는 반드시 '23.8.14.(월)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한글파일 양식(hwp) 서류와 원본 스캔본(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 동반성장위원회
 - * 문의처 : 적합업종부 변문석 대리 / TEL : 02)368-8982
- (선정절차) 포상대상자 접수 및 추천(동반위→중기부) 후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심사(중기부)를 거쳐 유공자 결정

□ 추천기준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 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관)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년도부터 표창추천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한 대기업 중,
 - * ('23년) 시행년도~표창추천일 → ('24년 이후) 표창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
 -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령 사항 준수를 위해 주기별 관리 실적 및 내부 기준 정비 등 제도의 충실한 이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개인)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추천 당시 재직자가 해당 분야(수공기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내부 관리기준 마련·정비 및 예방점검, 업무추진 협조성 등 제도 이행에 기여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 * 단,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 한하며, 동일 기관 내 추천 인원은 2인 이내로 한정

□ 추천제한 ※ 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기관) 단체표창을 받은 기관은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개인) 이미 받은 표창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심사 절차

- **1차 심사(적부)**
 - 접수기관(동반성장위원회, 이하 '동반위')은 추천된 포상대상자에 대해 신청서류 등의 기본요건에 결격사유에 대해 적부심사 실시하여 '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심사(종합)**
 - 동반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공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심사를 실시
 - 동반위는 종합심사 결과를 중기부에 송부
- **최종 심사(공적)**
 - 중기부는 추천대상자를 접수하여 중기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 결격사유* 및 제한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

* ①범죄경력, ②산업재해, ③공정거래, ④임금체불, ⑤국세, 관세, 지방세

< (참고) 포상 추천 제한사유 조회경로 >

- 국세·관세·지방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에서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확인
 - 산업재해 : 고용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불공정행위 : 공정위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임금체불주 : 고용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 국세·관세·지방세 : 우리부 장관 표창,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 우리부 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는 위 경로로 직접 조회하고,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사유별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조회 요구
 ※ 범죄경력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정부포상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서식 6)'로 본인 확인

3.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내 용
포상지침 수립·통보	~ 7.14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		
포상계획 공지	7.14.	· 포상계획 공지
↓		
신청·접수	7.14.~8.14.	· (동반위) 후보자 신청·접수
↓		
심사	~ 9.30.	
- 1차 심사(적부)	~ 9.15.	· (동반위) 서류 및 기본요건 적부 확인
- 2차 심사(종합)	~ 9.30.	· (동반위) 공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중기부)
↓		
제한사항 확인	~ 10월중	· (중기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등
↓		
최종심사	~ 10월말	· (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확정
↓		
표창	~ 11월중	· (중기부) 유공자 표창

*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신청·접수) '23. 7. 14(금) ~ 8.14(월)
- (제출서류) 붙임2 [서식 1~6] 제출
 - (기관) 포상신청서(서식1), 공적개요(서식2), 장관 포상 추천자 현황(서식3), 공적조서(서식4), 포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6)
 - (개인) 포상신청서(서식1), 공적개요(서식2), 장관 포상 추천자 현황(서식3), 공적조서(서식5), 포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6)

□ **개인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 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상태에 있는 자

8)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 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 제외

□ 기관(단체) 포상

-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 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 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제출서류 서식모음 (서식1~서식5)

□ (서식 1) 공적개요서

공 적 개 요

연번	추천 부서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생년, 나이)	주요 업무경력 및 공적 (최근 2년 이상)	후보자 추천 사유	수공기간	과거 포상 (장관 표창 이상)
1	OO과	후보자의 소속 작성	(예시) 팀장	OOO (88,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과 관련된 내용 요약 작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OO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추천함 	0년 0월	-

□ (서식2) 포상 신청서

2023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자 포상 신청서

부문명	<input type="checkbox"/> 기업 / <input type="checkbox"/> 기업인 /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 담당자 (해당 부문에 V 또는 ■ 표시)
------------	--

추천대상자 (포상후보자) 현황	기관명(기업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한자)	홍길동(洪吉童)		
	부서/직급	/	전화	(H.P.) (사무실)
	근무지 주소 (우)			
	E-mail			
	주요경력	경력사항	기간	
	·	2023년 1월 10일 ~ 2023년 7월 31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천 기관 (기업) 정보	기관명 (기업명)				
	대표자	성명(한자)	대표전화		
	구분	주 소			
		설립일자	홈페이지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업 종 (주생산품)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		
	추천인	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2023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자 표창」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기업)명 : (직인)

추천관 : (인/서명)

- ① 업체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
- ② 이력사항 기재시 연월일자까지 반드시 기입요망
- ③ 포상후보자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 제출 필요

□ (서식 3) 추천자 현황

장관 포상 추천자 현황

○ 포상명 :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징계 (연도·종류, 사면)	물의야기 (일사·내용)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임금 체불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일반국민)	대표이사		00년 00월	중대재해 (00-000호)	고발1 과징금1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무
(단체표창)	-										

* 범죄경력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정부포상만 조회 가능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 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 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작성자 (포상추천부서명)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포상추천부서명) 과장 (직급) (성명) (서명)

<참고. 추천 제한사유 조회경로 >

- 국세·관세·지방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확인

< 참고 > 국세·관세·지방세 추천제한 기준 변경 사항

기존	⇒	개정(2020.1.1. 시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재해 : 고용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불공정행위 : 공정위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 임금체불주 : 고용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 국세·관세·지방세 : 우리부 장관 표창,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 ※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 우리부 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는 위 경로로 직접 조회하고,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사유별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조회 요구

□ (서식 4) 공적조서(단체)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주 소			
법 인 번 호 사 업 자 번 호		대 표 전 화 번 호	
대 표 명			
주 민 번 호			
주 소			
소 속		연 락 처	
추 천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p>공적요지(70자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p>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p>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추천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p>			

* 조사자 : 각 과장, 행정실장(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 추천관 : 각 국장, 지방청장, 교장(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차관)

주요 이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	

□ (서식 5) 공적조서(개인, 일반국민 공통)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주 민 번 호 (생 년 월 일)		군 번 (군 인 의 경 우)	
		국 적 (외 국 인 의 경 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추 천 훈 격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산 업 경 제	공 적 기 간	
<p>공적요지(70자 이내)</p> <p>※ 60~70자 작성</p> <p>※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p> <p>※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p>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p>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추천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p>			

* 조사자 : 각 과장, 행정실장(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 추천관 : 각 국장, 지방청장, 교장(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차관)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0000년 0월 00일	0000 입사
0000년 0월 00일	現 0000 000팀 팀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명
0000년 0월 00일	0000 표창
공 적 내 용	
<p>공적사항은 구체적인 실적(수치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되, 사례 등을 포함하여 최소 2,000자 이상으로 작성(띄어쓰기 포함)</p> <p>* 추상적 내용을 나열하거나 막연한 문구(많이, 크게, 상당히 등)는 지양하고, 작성 분량이 2,000자를 넘지 않을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p>	

□ (서식 6)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 (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공적심사규정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형사처분 받은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세금체납 등) 해당 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표창 수여 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부표창규정」 제27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포상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